



## I. 머리말

2004년 제17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개폐논의에 휩싸인 국가보안법은 거센 폐지론에 몰려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지만, 한겨울의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가보안법을 끝장내려는 시민들의 열망을 뒤로 한 채 민의를 대변한다던 국회는 “국가보안법은 이를 폐지한다.”는 불과 한 줄의 법률을 끝내 만들어내지 못하였다.

당시 ‘국가보안법을 고치거나 폐기하지 말고 저절로 사라지도록 하자’는 ‘국가보안법 고사론’이 기억난다. 마치 국가보안법의 유언을 대신하듯 편히 가게 내버려 두라는 나지막한 말투로 사람 속을 뒤집어 놓았었다. 결국 4년 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이적(利敵)을 양산해내는 국가보안법의 이적(異蹟)을 보노라면 ‘악법도 60부터’라고 복수의 광기 어린 칼을 휘두르고 있는 형상인가 싶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공포된 이래 60년 동안 악법의 대명사로서의 악명을 유지해 왔다. 그 중 3분의 1을 차지하는 최근 20년간은 이른바 민주화 시기였는데도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지 않았다. 아직은 민주주의가 살아나지 않았다는 반증일 것이다. 오히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아래 “집시법”으로 줄임)은

\* 이 글은 “60년 묵은 악법, 국가보안법을 위한 변명”, 제1차 신공안정국에 맞서는 국민대토론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학술단체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만해 NGO 교육센터 대교육장, 2008.10.10, 3-20쪽을 수정·보완하여 전제한 것임.

수차례 개악되면서 어느덧 국가보안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악법의 쌍두마차로 자리를 잡았고, 국가보안법보다도 더 치고나갈 기세이다.

그리고 보면 민주화 시대에 오히려 독재정권 시절보다 많은 악법들이 등장했고, 예를 들어 테러방지법처럼 세상에 선을 보이고자 몸부림을 쳤던 것 같다. 그럴 때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기를 쓰고 악법의 탄생을 막아보려고 애를 썼고, 나의 경우에도 몇몇 법(안)에 대해서는 이리저리 법조문을 해석해가며 요모조모 위헌론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악법의 물결은 쉬 수그러들지 않았고, 현 정권은 준법을 외치며 점점 난폭해지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국가보안법체제’란 말은 여전히 타당하다. 2008년 국가보안법체제는 진작 폐지되었어야 할 국가보안법을 계속해서 공안의 최전선으로 내몰아왔고 또 다시 낡은 법을 앞세우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배후조종세력이 건재함을 시위하였다. 국가보안법이 60년 동안 버텨올 수 있었던 까닭이 거기에 있었고, 그들은 끊임없이 제2, 제3의 국가보안법을 만들어냈거나 지금도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다.

‘오로지 체제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민주주의와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 경찰,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 그들이 바로 ‘폐지대상’이다. 이들은 1%의 99% 자유를 위하여 99%에게는 1%의 자유만 인정하고 99%의 부담과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현 ‘강부자 정권’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다. 이들 모두가 시장맹신자본주의인 신자유주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민주공화국’을 뇌사상태에 빠뜨려 놓았다. 어찌 보면 국가보안법은 역대 정권의 희생양일 뿐이므로 국가보안법에게 쏟아졌던 그 모든 비난은 고스란히 공안기관, 반민주적·반인권적 정권, 과거 반공이데올로기 지배체제와 지금의 친자본·반서민적 신자유주의 지배체제에게로 돌려져야 한다.

## II. 시장맹신자본주의의 강요와 그에 대한 저항의 폭력적 진압과 예방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시작된 촛불집회는 그 의제를 무한경쟁의 입시 위주 교육정책 반대, 운하건설계획 백지화, 의료보험 사유화 반대, 공기기업사유화 반대, 인적 장악과 법제 개악을 통한 언론 공공성 침탈 등으로 확장하였다. 유례 없는 국민의 직접행동에 놀란 이명박 정부는 촛불집회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때로는 정면으로 때로는 우회하여 전면적인 공세적 대응을 강화해 가고 있다.

과거 쿠데타로 집권한 정권은 제 입맛대로 멋대로 만든 ‘법(에 의한) 질서’ 준

수를 외치며 다수 국민을 억박질러 집권과정에서 민주적 정당성 부재 문제를 물리력으로 돌파하였다. 국민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었던 또 다른 밑천은 경제권력을 비롯한 각 부문 어용권력과의 유착이었다.

그런데 헌법이 정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절차적으로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출범 초부터 그 어느 독재정권 못지않게 강압적인 경찰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sup>1)</sup> 그것은 아마도 또 다른 차원의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입만 열면 공언하듯 경제 살리기 묘안을 기업 또는 소수 돈 있는 자들에게만 프렌들리하게 짜내려다보니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쯤 되면 그토록 강조하는 법질서에서 법도 내팽개치고 오로지 질서만 부여잡고 정치적인 ‘선전목적의 상투적 문구’<sup>2)</sup>로 법치를 동원하는 지경에 이를 것은 뻔히 보이는 결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법치주의가 “정치적 개념으로 악용될 경우 지배체제에 대한 절대적 귀의를 강요하는 일종의 준법논리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sup>3)</sup> 민주주의 토대 없는 법치는 무법(無法)천지와 다를 바 없으며, 굳이 법치가 있다고 우긴다 해도 그것은 무력에 방점이 찍힌 ‘무’(武)법일 뿐이다. ‘무늬만 법치’인 무법천지에서 법은 폭력의 외피일 뿐이다.<sup>4)</sup>

## 1. 시장맹신자본주의의 강요

신자유주의 경향은 ‘사회관계의 총체를 시장관계 중심으로 재편하거나 시장경제 논리에 최대한 종속시킴으로써 자본운동의 자유를 극대화’<sup>5)</sup>한다. 국민국가의 경제정책은 점점 세계시장의 동학과 국제기업의 전략에 좌우된다. 이른바 ‘신입헌주의’는 적극적으로 ‘국제적 정치경제논리가 국민국가의 재정·통화·무역·투자 정책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국민국가 내의 민주적 결정과정을 제한함으로써 정치가와 시민으로부터 소외’<sup>6)</sup>시킨다. 그리하여 근·현대 헌법규범의 전도적인 붕괴현상이

1) 상세한 것은 이계수/ 오병두, 「친기업적 경찰국가와 민주법학: 비판과 대응」, 『민주법학』 제 38호, 2008.12, 11-38쪽.

2) Philip Kunig, Das Rechtsstaatsprinzip: Überlegungen zu seiner Bedeutung für das Verfassung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J.C.B. Mohr, 1986, 123쪽 아래: 국순욱, 「법치국가의 신화와 현실」, 『민주법학』 제18호, 2000, 98쪽에서 재인용.

3) Philip Kunig, 앞의 책, 124쪽 아래: 위와 같음.

4) 오동석, “민주주의 없는 법치는 무법천지”, 인권단체연석회의 주최, 『이명박 정부의 법치주의: 민주주의 대 법치주의』, 2008.5.14, 2쪽.

5) 김세균, 「신자유주의와 정치구조의 변화」, 김성구/ 김세균 외,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문화과학사, 1998, 61-2쪽.

6) Gill, Stephen, “Globalisation, Market Civilisation, and Disciplinary Neoliberalism”,

나타난다. 즉 근대헌법이 추구했던 정치적 자유주의에 입각한 최소국가와 현대헌법이 추구했던 사회복지국가원리에 입각한 적극국가는 정반대로 전화하여 국가는 정치적·사회적 영역에서는 억압적으로 간섭하여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인권을 침탈하는 한편 경제적·사회적 영역에서는 최소한으로 개입함으로써 자본의 반인간적 이윤추구를 방임한다.<sup>7)</sup>

2008년의 시장맹신자본주의 정책은 서민들의 총체적 삶, 더 나아가 생존 그 자체를 치명적으로 위협한다. 그것이 미국의 것이든 중국의 것이든 한국의 것이든 또 다국적 소속이든 자본의 무한이윤 추구의 관성은 기초적인 먹을거리부터 위협에 빠뜨렸다. 그 중 몇 가지만 꼽아도 광우병 파동, 조류독감, 식량위기, 유전자조작식품, 멜라민 파동 등 심각하기가 이를 데 없다. 문제는 이러한 위험성이 “복잡한 상품의 가치사슬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위험의 투입과 이전 경로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sup>8)</sup>는데 있다.

사실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상응하는 기초생활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그 핵심은 의식주 기본권일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먹을거리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정책과 재개발을 통한 주거권의 불안정, 전기·가스·수도·교통 사유화를 비롯한 공기업 사유화<sup>9)</sup> 등 의식주기본권 전반에 걸쳐 훼손을 가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진료기관 당연지정제 논란, 의료 영역의 사유화, 자본의 이윤추구에 휘둘리는 의약품 가격 문제 등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며,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운하 건설 논란, 골프장 완화 정책 등은 건강한 환경을 무너뜨려 현재는 물론 미래의 세대의 건강권까지 지속적인 위협가능성에 노출시킬 수 있다.<sup>10)</sup>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1995, 412쪽, 413쪽: 엄순영, 「법의 세계화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 『민주법학』 제28호, 2005, 141-2쪽에서 재인용.

7) ‘약화되면서도 동시에 강화되는 경찰국가’에 대하여는 이계수,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와 경찰국가의 강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엮음, 『신자유주의와 민주법학: 2001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 관악사, 2001, 70-72쪽 참조.

8) 한국의 수입식품 의존도는 전체 열량기준으로 65%에 이르며, 가공식품의 경우는 80%를 넘어선다. 현재 126개국에서 3000여 가지의 식품을 수입하는데, 그 중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세계 식품 첨가제의 80%가 또한 저렴한 중국산이다. 결국 중국은 잉여생산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용과 위험의 요소를 은폐함으로써 상품 외에 소비자가 원치 않는 치명적 위험을 덩이로 얹어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 것이다. 조명래, “[경제칼럼] 금융 위기와 먹거리 위기”, 경향신문, 2008.10.8자.

9) 예컨대 ‘1차 공기업 선진화 대상이 아니었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08.8.11 이명박 대통령과 케빈 러트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던 날 전격적으로 대상에 포함(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되었는데, ‘건설비 9조2천억 인천공항 지분 절반을 2조 미만에 매각할 계획’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민주당 김성순 의원). 경향신문, 2008.10.7자.

10) 오동석, 「친자본반인권적 보건의료정책 비판과 대안」, 『민주법학』 제38호, 2008.12, 78쪽.

다음으로 노동할 권리와 노동3권을 위협하는 자본 중심의 정책<sup>11)</sup>은 노동하는 삶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예컨대 노동부는 비정규직 고용기간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sup>12)</sup> 더욱이 1% 대 99%의 사회양극화 정책은 서민의 삶에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부담을 안김으로써 서민들은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살고 있다. 예컨대, 감세정책 기초의 세제개편,<sup>13)</sup> 1[2]%)를 위한 중부세의 무력화, 뉴타운 정책<sup>14)</sup> 등이 그것이다.

## 2. 국민 저항에 대한 폭력적 진압과 예방

사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치고 어느 하나 힘없는 서민들을 위한 것이 라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촛불집회와 같은 국민적 저항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앞으로 그러한 국민적 저항은 촛불집회와 같은 조용한 저항을 넘어 더 거세질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정책기조 자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이러한 서민들의 저항에 대하여 대비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선제적·예방적 진압장치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먼저 주요 언론의 친자본화·친정부화와 동시에 인터넷 언론의 입막음이다. 예컨대 100대 국정과제 중 언론의 공공성 강화와 방송·통신산업 규제 완화,<sup>15)</sup> MBC 'PD 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한 수사, KBS 표적감사<sup>16)</sup>와 KBS 사장의 강제 교

11) 2008.10.7. 민주노총이 발표한 '좋은 일자리 지수 OECD 국제비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시직 비율은 29.7%로 OECD 가입 28개국 중 스페인(30.4%)에 이어 2위로서 OECD 평균 임시직 비율(13%)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한편 저임금 노동자 비율(24.5%), 성별 임금격차(38%), 연간 노동시간(2261시간), 인구 10만명당 산재 사망자수(30.8명)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불명예 1위'를 차지했으며, 고용률은 54.8%(27위)로 최하위권에 속했다. 경향신문, 2008.10.8자.

12) 이는 경영주들의 요구였는데,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기간 제한을 철폐할 것까지 요구하였으며 또한 이와 더불어 파견업무 대상 확대를 요구해왔다. 경향신문, 2008.10.7자.

13)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2008년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상류층 기준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출하더라도 소득 상위 10% 계층에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2008.10.8자.

14) 서울지역의 뉴타운 개발이 완료되면 최소 14만명이 자신이 거주하던 삶의 터전을 잃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김희철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총괄 추진 현황' 등의 자료에 따르면, 지구지정된 35개 뉴타운 중 재정비촉진정비계획이 결정된 27개 뉴타운의 수용인구는 58만4339명으로 집계되었는데, 현재 이곳에 거주하는 인구는 72만4585명으로 뉴타운 사업을 통해 14만246명의 거주인구가 줄어들게 된다. 원주민의 20% 정도가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셈이다. 예컨대 가재울뉴타운의 경우 현재 거주하는 인구는 5만5370명이지만 뉴타운 개발이 완료된 뒤 계획된 수용 인구는 2만6706명이어서 현재 인구보다 무려 51.8%가 줄어든다. 경향신문, 2008.10.8자.

15) 경향신문, 2008.10.8자.

16)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위원회 결정 과정에서 "주로 외부 감사 위원들이 문제를 지적하고 내부 감

체, YTN 구본홍 사장 임명과 노조위원장 해고 등 그의 보복적인 무더기 중징계 조치,<sup>17)</sup>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고, 인터넷 포털을 ‘인터넷 신문’에 포함, 규제하도록 하는 신문법 개정안, 인터넷 실명제 확대<sup>18)</sup>와 ‘사이버 모욕죄’ 신설 시도 등이 그것이다.

두 번째는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서민적인 집회·시위의 원천봉쇄이다. 집회와 시위는 신문이나 방송 같은 표현 매체에 접근하기 어려운 서민들이 손쉽게 자신들의 의사나 의견을 표출하고 전달하는 가장 원초적인 표현수단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미 충분히 악법인 집시법에 대하여<sup>19)</sup> 복면 및 마스크 착용 금지, 평화적 집회·시위구역 설정, 소음규제 강화 등의 개악을 피하고 있다.<sup>20)</sup> 고교생 등 촛불 집회 참가자를 무차별적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고, 심지어 유모차 엄마들을 아동 학대죄로 처벌하려고도 하고 있다.<sup>21)</sup>

마지막으로 국가비밀주의의 강화이다. 예컨대 민감한 자료에 대한 행정부의 국정감사 자료 제출 버티기식 거부와 자체 보안성 심의를 통한 제출 거부,<sup>22)</sup>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sup>23)</sup>에서 비밀의 범위를 “통상·과학·기술개발 등 국

사위원들은 (감사결정으로 유도)한 것으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해석하였다. 경향신문, 2008.10.7자.

- 17) 경향신문, 2008.10.8자. 그 내용은 전·현직 노조집행부 6명 해고 등 노조원 33명 중징계였는데, 이들은 사장의 낙하산 임명에 대해 반대하여 사장 퇴진을 주장하면서 3개월 가까이 출근처지 투쟁을 벌여왔으며, 사원 283명이 릴레이 단식농성에 돌입하기도 하였다. 경향신문, 2008.10.7자.
- 18) 인터넷 실명제를 하루 평균 이용자 10만 이상 사이트로 확대하는 ‘최진실법’이 그것이다. 2007년초 자수 유니씨가 자살한 지 5일 후 국회는 하루 평균 이용자 30만명 이상의 포털 사이트 및 20만명 이상의 언론사 사이트를 대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했다. 민경배, “최진실법” 운운은 모욕죄”, 경향신문, 2008.10.8자.
- 19) 상세한 것은 오동석, 「집시법의 위헌성 쟁점 검토」,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08년 한국과 표현의 자유 학술대회』, 서울대 법대 백주년기념관 소강당, 2008.12.13, 87-104쪽.
- 20) 상세한 것은 조국,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집회·시위 선진화방안”과 제18대 국회 집회·시위규제법안 비판」,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08년 한국과 표현의 자유> 학술대회』, 서울대 법대 백주년기념관, 2008.12.13, 65-83쪽.
- 21) 국제 앰네스티는 촛불집회 최종보고서를 통해 “대체로 경찰이 절제력 있고 능숙하게 행동했지만, 특정 경우에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거나 멋대로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금자를 부당하게 처우하는 등 국제법과 국제기준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앰네스티는 현행 집시법을 개정하고 인권 유린 책임자를 찾아내 처벌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어서 시위진압 경찰이 국제 인권기준에 맞게 경찰 장비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분명한 기준과 함께 엄격한 훈련을 받아야 하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진압 경찰의 이름표를 달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겨레, 2008.10.8자.
- 22) 2008.4 총리실 주도 하에 부처별 보안심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제출거부 문서 목록에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친·인척의 청와대 출입기록, 종부세 개편 관련 세입추계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의 브리핑). 경향신문, 2008.10.7자.
- 23) 의안번호 819, 2008.9.2 정부 제출.

가이익과 관련된 사항까지 확대” 등이 그것이다.

국민의 경우 공개투표 아닌 비밀투표에 의하여 익명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권력의 경우 투명성을 높이고 헌법개정안 의결시 기명투표를 하게 하는 등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비밀 보호 그리고 권력의 투명화와 책임성 확보가 헌법적 발전일 터인데, 인터넷상에서 실명제를 확대함으로써 익명의 권리를 부정하고 오히려 정부는 비밀의 베일을 덮어쓰려는 것은 역사를 거스르는 일임에 틀림없다.

### 3. ‘결단주의적 우적론’에 입각한 전체주의적 준범이데올로기

국순옥은 전투적 민주주의 끝에서 칼 슈미트류의 결단주의적 우적론을 발견한다.<sup>24)</sup> 사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우적론은 헌법충성도 아닌 맹목적인 질서충성이다. 그 선봉에 색깔론과 매카시즘적 마녀사냥 그리고 사상통제의 얼굴마담 국가보안법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역사교과서 내용을 문제 삼은 수정 요구<sup>25)</sup>를 비롯한 역사의 왜곡 또는 획일화,<sup>26)</sup> 국정감사에서의 색깔론<sup>27)</sup>과 매카시즘적 사상검증,<sup>28)</sup> 국방부의 불온도서 지정 등이다.

또한 국가보안법과 그 뒤를 따르는 반공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한

24) 국순옥,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무엇인가」, 『민주법학』 통권 8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994, 155-156쪽.

25)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는 북한 교과서를 그대로 베낀 것”이라며 북한 역사교과서인 ‘현대조선역사’를 들고 나왔고, 같은 당 박보환 의원은 “1980~90년대 운동권이 읽던 책과 유사한 교과서로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역사에 대한 쿠데타”라고, 같은 당 이철우 의원은 “지난 5년간 좌파 전교조 교사들이 마음대로 편향된 역사 교육을 시켜왔고, 결국 청소년들의 왜곡된 역사관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2008.10.8자.

26) 이상희 국방장관은 2008.10.6.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3 사건은 사건을 주동하고 개입한 남로당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일으킨 무장폭동이라는 것이 국방부의 일관된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애초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제주 4·3 사건’을 ‘좌익세력의 반란’으로 표기해 달라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했다가, 논란이 일자 지난달 ‘좌익세력의 무장 폭동’으로 수정 제안했다. 한겨레, 2008.10.7자.

27)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문예진흥기금·방송발전기금 중 지난해까지 5년동안 76억5000만원이 좌파 단체에 지원됐다”면서 기금의 좌편향 지원을 문제 삼았다. 경향신문, 2008.10.8자.

28) 2008.1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BS 표적감사 관련 증인인 KBS 이기욱 이사가 “KBS 감사가 무리였다고 본다”고 답하자,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6·25는 북침이나, 남침이나”고 질문한 뒤 “북한이 6·25를 일으켜 수백만명을 죽였는데 유엔 참전군 일부가 민족학살을 한 것을 가지고 (KBS가) 6·25만 되면 들어댔다. 북한군을 미화하고 미군이 더 나쁘다는 식으로 호도해도 되는 거냐”고 질책했다. 최병국 의원도 “공영방송에 적기가 나오고, 송두술 교수를 민주투사로 묘사하고, 마오쩌둥 업적을 찬양하는 등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을 용인해도 된다는 거냐”고 호통쳤다. 경향신문, 2008.10.8자.

반도의 평화분위기는 그리 반길 일은 아닐 것이다. 북한을 동반자라기보다 적으로 보는 시각에 편향된 입장에서 굳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생길 리도 없을 것이고 그럴 필요성도 못 느낄 것이며, 오히려 북한과의 관계가 꺾어질 것이라면 대내적 불만을 다스리기가 수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6·15와 10·4 선언 내용의 이행에 나서기는커녕 대북 식량지원에 배짱 텅기기로 일관하면서 100대 국정과제에 ‘비핵·개방3000’ 구상이나 집어넣는 행태가<sup>29)</sup> 이해될 법하다.

한편 적은 친구를 통해서 그 존재감이 도드라진다. 짝사랑 혈맹관계를 내세운 과잉 친미 정책이 그것일 것이다. 특히 “FTA라는 양자간 협정을 통해 ... (한국) 경제를 미국경제에 확고히 편입시키고, 이를 토대로 ... 확고한 정치군사적 동맹체제를 구축”(팔호 안은 인용자)함으로써 “경제적·정치적·군사적 합병”<sup>30)</sup>을 마무리 지으려 하고 있다.<sup>31)</sup> 그밖에도 한미군사관계의 경우 100대 국정과제 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적정성 평가·보완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민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수입쇠고기 위생조건 고시를 강행하여 시중에는 위험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미국산 수입쇠고기가 유통 중이다.

다른 한편 적은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 그 내부의 적을 색출하고 공격하는 데는 공권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시민사회의 분열을 부추기거나 아니면 두 손 들어 반길 법도 하다. 사회의 자율성을 갉아먹는 전체국가화 경향이 제법 쓸모가 있을 것이다. 더욱이 신자유주의의 교리는 규제완화를 통하여 자본의 자유를 허용할 뿐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자율성에 대하여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자유를 부정하고 있기까지 하다.

그리하여 한편으로 이명박 정부는 학문, 예술, 교육의 영역에 개입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예컨대 예술과 연구기관에 대한 임기를 무시한 코드 인사,<sup>32)</sup> 예산지원의 차별화,<sup>33)</sup> 역사교과서 문제, 국립현대미술관 구입에 대한 국정감사 질

29) 경향신문, 2008.10.8자.

30) 김세균, 「한미FTA 국민보고서 총론」,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엮음, 『한미FTA 국민보고서』, 그린비, 2006, 20쪽.

31) 미국은 2002년 칸쿤 WTO 각료회의 실패 이후 GATT/WTO 제24조에 명시된 FTA를 적극 활용하여 자신의 일방주의적 통상전략을 관철시키고 있다(이혜영, 『낮선 식민지, 한미 FTA』, 메이데이, 2006, 19쪽).

32)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서 “기관장이 교체된 기관은 예산이 증액됐고, 교체가 안된 곳은 감액됐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23개 국책연구기관장 중 15개 원장이 바뀌었”는데, 그 중 11명이 정권교체 및 인수과정에서 역할을 했던 인물 “임을 지적하고 있다. 경향신문, 2008.10.7자.

33)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황지우)가 2007년부터 추진해온 예술과 과학의 통섭교육에 대한 예산이 실무 차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되었는데,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예종이 좌파 엘

의<sup>34)</sup> 등 색깔론, 국방부의 불온도서 지정,<sup>35)</sup> 교사의 동아리활동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sup>36)</sup> 등이다. 다른 한편 친자본적·보수적 관변단체는 국가권력과의 이념적 동지의식을 내보이며 국가권력의 억압적 개입을 이끄는 여러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예컨대 감사청구제도를 활용하여 KBS 표적감사 청구,<sup>37)</sup> 사립대학에서 비리 설립자의 복귀 시도 등이다.

### Ⅲ. 공안기관의 발호와 여타 국가기관의 공안주변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불과 7개월여 밖에 되지 않았지만, 국민과의 민주적 소통을 모르는 제왕적 대통령이 귀환하였음은 이미 충분히 증명되었다. 공안기관에게 10년의 세월은 옛날에 비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멀었던 왕의 귀환을 고대했던 긴 세월이었을 것이다. 여기에 다른 권력적 국가기관까지 충성경쟁에 돌입하였다.

#### 1. ‘제왕적 대통령’의 귀환과 공안기관의 충성경쟁

국가정보원은 2008년 9월 27일 검찰·경찰과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 활동가 6[7]명을 체포하고 40여명의 검·경 수사관과 경찰을 동원하여 중앙사무실과 서울실천연대, 한국민권연구소, 6·15 티브이(TV), 6·15출판사, 부산·광주 등 지방사무실 그리고 단체대표 등 간부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모두 24[25]곳을 수색하여 컴퓨터와 책, 문건, 방송장비는 물론 통장까지 압수했다.<sup>38)</sup> 이 단체의 홈페이지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6·15 티브이에 복한 관련 게시물이 올라온 것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고무·찬양’<sup>39)</sup> 또

리트 집단이라는 뉴라이트 진영과 현 정권의 시각이 반영된 처사”라고 해석했다. 경향신문, 2008.10.7자.

34)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서면질의서에서 “2004년 이후 현대미술관에서 구입해오던 민중계열 작품이 2007년에는 구입 작품의 56.1%에 해당하는 148점”인데, 그 구입 경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2008.10.8자.

35) 정부기관이 금서로 낙인을 찍는 경우는 대부분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죄이며, 이적표현물 여부 판단은 경찰의 공안문제연구소, 대검찰청의 민주이념연구소, 군의 ‘정훈문화자료 심의위원회’ 등에 한다. 정현상, “시대의 금지, ‘불온도서’의 추억,” 인권 52호, 국가인권위원회, 2008.9-10, 38쪽.

36) 최보경 교사는 2008년 2월 자신이 지도한 간디학교 동아리 ‘역사배움터’를 통해 북한의 주체사상을 정당화하고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향신문, 2008.9.29자.

37) 뉴라이트전국연합이 감사를 청구했다.

38) 한겨레, 2008.9.29자; 경향신문, 2008.9.29자.

는 제7조 제5항 ‘이적표현물 소지’,<sup>40)</sup> 제7조 제3항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sup>41)</sup> 등이 거론되었다. 이와 관련 “실천연대가 남북교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북한에 대한 이해를 중요시하는 단체이다 보니 북한 관련된 참고자료가 많은 점을 국정원이 노린 것 같다”는 우려와 함께 촛불집회의 배후로 지목했다는 주장이 있었다.<sup>42)</sup>

한편 국가정보원 2차장은 2008년 10월 1일 사정당국의 공안 수사와 관련, “한국 내에 친북좌익세력 척결 없이 선진국을 향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sup>43)</sup> 옛날 독재정권 시절에 놀던 물에 선진화로 치장한 꼴이다. 국가정보원은 ‘정보는 국력이다’라는 원훈(院訓)을 10년 만에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無名)의 헌신’으로 바꾸었다. “기존 원훈이 정보기관의 기능과 사명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새 원훈에서 ‘자유와 진리’는 정보기관의 지향점을, ‘무명의 헌신’은 정보활동의 원칙과 사명감을 담았다는 것이다.<sup>44)</sup> 그런데 사상·이념·표

39) 2007년 정보통신부는 실천연대 쪽에 400여건의 북한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요구했지만, 실천연대는 “정통부에서 삭제를 요구한 게시물은 누리꾼들이 자발적으로 올린 것으로 삭제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를 거부한 바 있다. 그리고 6·15 티브이에 북한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그대로 올렸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겨레, 2008.9.29자. 실천연대 관계자는 “6·15TV는 정식 언론사로 등록돼 있으며 실천연대와는 독립된 기관이고, 우리의 일부 주장이 북한 측과 유사할 수 있지만 독자적인 판단과 연구의 결론일 뿐 북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2008.9.29자.

40) 경향신문, 2008.9.29자.

41) 한겨레, 2008.9.29자.

42) 민주노동당 박승홍 대변인은 “정부가 촛불 국민과 정적을 통제하고 길들이는 수단으로 보안법을 앞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2008.9.29자. 연행자들을 집결한 담당 변호사도 “실천연대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하면서부터 보수단체 등에 의해 촛불의 배후로 지목돼 왔다”고 말했다. 이 단체 대표는 “실천연대는 통일부에 가입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합법적 단체”라며 “우리 단체가 이적단체라면 공안당국은 8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한 거냐”고 비판했다. 한겨레, 2008.9.29자.

43)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실천연대 수사와 관련하여 항의 방문을 한 자리에서 “실정법이 있는 한 충실히 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리고는 “법원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국가존립과 안전에 실질적 위협을 끼칠 이적성 있는 단체라고 했다”면서 “한 달 뒤 수사결과 경위와 그 내용을 밝힐 수 있다.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 전에 말할 수 없다”, “법원이 사노련 사건과 같은 법원이다. 엄격하게 본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한 달 전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소속 회원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이 실천연대 간부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을 감안하면 실천연대의 이적성은 분명하다는 주장이다. 김 차장은 전날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서도 “이번 사건은 국정원이 그간 내사해온 사건으로 갑자기 불거진 게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 2008.10.2자.

44) 1961년 국정원 전신 중앙정보부가 창설된 이래 국가안전기획부 시절까지 37년간 부훈(部訓)은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였는데,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원훈도 ‘정보는 국력이다’로 변경됐다. 기관 명칭과 원훈의 변경은 크게 봐서 군사독재정권과 민주화자유주의정권, 신보수주의정권 등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손동우, “[세상속으로]어색한 ‘자유와 진리’”, 경향신문, 2008.10.8자.

현의 자유 없는 자유와 진리가 가당키나 한가.

동시에 국가정보원은 국가보안법을 매개로 구시대 ‘국가보안’시장(市場) 회복 및 활성화, 과거에 몇 차례 시도하다 실패했던 ‘대테러’시장 개척, 법질서 충성주의에 힘입은 ‘사정’시장 개척, 대통령의 기업프렌들리 정책을 후광 삼은 ‘기업’시장 재개척<sup>45)</sup> 등 10년만에 찾아온 호황을 만끽하고자 한다. 예컨대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2008년 9월 25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한 계획을 보면, 오는 11월 말까지 검찰이 지휘하는, 국가정보원을 포함한 6개 사정기관 합동수사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처럼 국정원에 국가보안법 위반범죄와 내란의 환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여 비밀정보기관에게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다. 그에 대한 폐지 목소리도 높다. “게슈타포와 KGB 등 강제수사권을 겸비한 정보기관은 예외 없이 공포기관으로 바뀌었다는 역사적 경험 외에도 비밀보안을 생명으로 삼는 정보기관과 재판과정에서 수사내용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수사기관은 속성상 양립하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이다.”<sup>46)</sup> 그렇다면 국정원은 일반적 부패비리 수사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정보 수집 권한은 국정원법상 국내 ‘보안’ 정보에 한정되어 “대공, 대북,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조직범죄”로 제한된다. 따라서 국정원이 부패비리 사정기관 합동수사팀에 합류한 것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요한 범법 행위다.

여기에 국군기무사령부까지 가세하여 블로그에 사회과학 서적 관련 글을 올려 놓고,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 등 서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이적표현물 소지·배포 등)로 수사를 행한 바 있었다. 사건의 당사자는 군검찰에서 국가보안법 위반과 관련된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 18일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했다.<sup>47)</sup> 그런데 그는 기무사에서 조사를 받은 열흘 남짓 “진술을 거부하거나 원하지 않는 대답을 내놓는 경우에는 바로 책상에서 각종 문건을 꺼내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을 읽으라고 강요”당했고 “어쩔 수 없이 밑줄 쳐 놓은 부분을 소리내어 읽으면 고스란히 진술조서에 자백을 한 내용으로 기록했다”며 “회유와 협박 등으로 자백을 강요받았던 악몽 같았던 시간”으로 기억했다.<sup>48)</sup>

45) 국정원이 동향파악이라는 이유로 주요 그룹들을 일주일에 두세 차례씩 방문해서 투자·고용 계획을 파악해, 무언의 압력을 넣고 있다고 한다. 한겨레, 2008.9.29자.

46) 광노현, “6개 사정기관 합동수사팀 운영계획, 국정원법 위반”, 프레시안, 2008.9.26<[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926165706](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926165706)>, 검색일: 2008.10.6.

47) 한겨레, 2008.8.28자.

48) 한겨레, 2008.7.16자.

## 2. 법질서 유지기관의 공안 강화

검찰도 제왕의 귀환 앞에서 충성경쟁에 돌입했다. “대통령이 한 마디 하면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은 앞서거나 뒤서거나 한 발 앞서가고 평검사들은 말없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복종할 뿐이다.”<sup>49)</sup> 조중동 광고주불매운동과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다룬 ‘PD 수첩’ 보도, KBS 정연주 전 사장의 배임혐의 수사 과정에서 ‘정치검찰’로서의 화려한 복귀신고를 마쳤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과 맞장 뜨던 호기는 상대적으로 다른 권력기관의 쇠퇴와 함께 권력욕으로 전락하였으며, 현직 대통령과 그 친인척, 집권당의 실세, 재벌 등 사회적 강자에 친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네티즌이나 언론, 직전 대통령에게는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표현한다.

더욱이 대검찰청은 지난 2005년 폐지했던 공안3과를 4년 만에 다시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촛불시위와 조·중·동 광고주 압박 운동 등 올해 초부터 각종 공안사건이 이어지자 공안 1·2과 체제로는 업무 부담이 많다고 판단해 3과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sup>50)</sup>

한편 경찰의 충성도는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는 서민들의 불만 표출을 원천봉쇄하는 것이다. 촛불집회에 대한 전면전 선포와 ‘대통령궁’으로의 근접을 막기 위한 ‘명박산성’이 대표적인 상징사건일 것이다. 대통령이 강조하는 준법을 강화하기 위해 헌법 위의 집시법을 지으려 한다. 앞서 언급한 평화시위구역 지정, 집회와 시위에서 마스크와 복면 금지, 각목 등 제조·운반·소지에 대한 처벌, 소음 규제 강화 등이 그것이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는 경찰은 2008년 9월 26일 사회주의 노동자연합(사노련)의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와 노동운동 활동가 등 7명을 긴급체포하여 “이들이 변란을 선전·선동해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려 했다”며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찬양·고무)과 제3항(이적단체 구성)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 했다. 이와 관련 경찰 안에서도 “무리한 법 적용”이란 비판이 나올 정도이다.<sup>51)</sup> 더구나 경찰은 사노

49) 하태훈, “다시 살아나는 ‘정치검찰’”,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2008.9, 16쪽.

50) 공안3과는 부장검사급 과장과 연구관 등 검사 1-2명을 포함해 10여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1994년까지 공안1·2·3·4과 체제로 운영되던 대검 공안부는 94년 공안4과가 없어진 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공안3과도 폐지됐다. 현재 남아 있는 공안1과는 대공·선거사범을 전담하고 공안2과는 학원·노동사범 수사를 총괄하고 있다. 한겨레, 2008.9.18자.

51) 한 경찰 고위 간부는 “우리도 이젠 이념적 행동과 주장은 여론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법적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국익이다.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자는 것은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고 국익을 명백하게 침해한다”고 말했다. 한겨레, 2008.8.28자.

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면서<sup>52)</sup> 촛불집회에 지속적으로 참가한 것을 두고 촛불집회에 색깔을 덧씌우려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sup>53)</sup> 한 인권단체 활동가는 “이번 ‘사노련 사건’은 그동안 뒷전으로 밀려 있던 공안기관들이 새 정부의 코드에 맞춰 ‘충성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본다”고 말했다.<sup>54)</sup>

#### IV. 맺음말

노무현 대통령은 ‘10·4선언’ 1주년 기념 공개 강연에서 “보안법은 이념적 대결주의를 뒷받침하는 근거이며, 남북 대화의 걸림돌”<sup>55)</sup>이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국가보안법이 박물관으로 가지 못하고 살아난 데다 구시대 공안정국 박물관이 통째로 되살아나고 있는 걸 보노라면,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날치기라도 주도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도 국가보안법에만 갇혀 있는 생각일 터이다. 그렇다고 국가보안법 구실을 과소평가할 일도 물론 아니다. 체제유지법으로서의 국가보안법은 “지배체제가 체제위협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국가폭력의 동원체계를 미리 조직하는데 본래의 입법취지가 있는 만큼, 그것이 폭력성을 띠게 되는 것은 개념필연적 귀결”이기 때문이다.<sup>56)</sup>

더욱 문제는 제왕에 놀려 민의를 저버리고 있는 국회이다. 국회가 통법부가 된 것이 어제오늘이 일이 아니지만, 한편 주목해야 할 것은 의원입법의 이면이다. 외국 입법 짜깁기 입법, 자구 수정 입법, 명목 없는 기관의 대리인 노릇, 국회의 헌

52) 하지만 이른바 ‘친북 성향’과는 정반대인 ‘정통 사회주의 계열’ 단체인 사노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북한)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선전·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단체를 말하기 때문이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극우든 극좌든 관계없이 특정 성향을 불법화하는 요건으로 ‘명백·현존하는 위험’이라는 잣대를 든다”며 “문서에 과격한 용어가 있다고 그 자체만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령으로 어떤 국가를 지향하는 간에 그 조직 결성 자체가 현재 사회질서에 대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초래할 때 처벌하는 게 최소한 오이시디(OECD) 국가들의 관례”라며 “심지어 대만도 최근 모택동주의 당 결성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한겨레, 2008.8.28자.

53) 한 경찰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이 단체는 촛불집회에 국가를 부정하는 논리에 입각해 폭력적인 방법으로 참석했다”며 “특히 폭력수단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현재 서울 옥인동 대공분실이 아닌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노련 회원의 경우 단체와 촛불집회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만 집중적인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 2008.8.28자.

54) 한겨레, 2008.8.28자.

55) 경향신문, 2008.10.2자.

56) 국순옥(1994), 앞의 글, 126쪽.

법적 권한을 축소시키거나 (예컨대 국군 외국 파견 관련 국회 동의 절차 간소화) 의회민주주의의 핵심인 소수파의 반대권 보장과 민주적 합의 원칙을 저버리는 (예컨대 법안의 위원회 심의절차 간소화와 본회의 자동상정) 입법 등이 그것이다. 백보 양보하여 정부 수립 초기 어수선했던 상황을 국가보안법 제정 근거라고 인정하더라도, 지금은 그 때가 아니다. 더욱이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국가보안법이 개악되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국회는 입법의 과거청산 작업의 일환으로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최근 무한경쟁으로 인한 팍팍한 삶의 고단함 때문에 자살이 증가하는 것만을 봐도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99%의 사람들은 삶 자체가 총체적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그만큼 정권도 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고 그러기에 친자본·반민주·반인권적 정권은 CEO독재의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일이 절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은 곧 국민 99%를 적으로 보는 ‘전투적 신귀족주의’<sup>57)</sup>이다. 그것은 자본 또는 정권에 밟보이는 자에게는 가차 없이 인권을 주장할 틈도 없이 법적 보호의 테두리 밖으로 쫓겨나 불법의 낙인을 찍는 ‘선진화’독재체제의 또 다른 이름이다. 따라서 2008년 국가보안법체제의 반헌법성은 단순히 국가보안법만이 아니라 그와 ‘연대’한 집시법, 그 배후세력으로서 공안기관과 상명하달 법질서를 강요하는 공안정권 그리고 시장맹신을 강요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공모공동정범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주제어 : 국가보안법, 신자유주의, 공안기관, 전투적 신귀족주의

57) 반과시즘을 계기로 나타난 ‘전투적 민주주의’는 냉전체제 아래에서 반공산주의, 9·11테러 사건을 거치면서 반테러리즘의 질을 획득하였다. 자유민주주의처럼 이 또한 신자유주의 아래에서는 민주주의란 이름조차 탈락한다.

## - 참고 문헌 -

국순옥(1994),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무엇인가」, 『민주법학』 통권 8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994, 125-165쪽.

국순옥(2000), 「법치국가의 신화와 현실: 본기본법체제 아래의 법치국가이데올로기」, 『민주법학』 통권 제18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0, 97-118쪽.

김성구/ 김세균 외,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문화과학사, 1998.

엄순영, 「법의 세계화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 『민주법학』 제28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5, 136-159쪽.

오동석, “민주주의 없는 법치는 무법천지”, 인권단체연석회의 주최, 『이명박 정부의 법치주의: 민주주의 대 법치주의』, 만해 NGO 교육센터, 2008.5.14, 1-8쪽.

오동석, 「친자본·반인권적 보건의료정책 비판과 대안」, 『민주법학』 제38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8.12.1, 69-98쪽.

오동석, 「집시법의 위헌성 쟁점 검토」,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08년 한국과 표현의 자유 학술대회』, 서울대 법대 백주년기념관 소강당, 2008.12.13, 87-104쪽.

이계수,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와 경찰국가의 강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엮음, 『신자유주의와 민주법학: 2001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 관악사, 2001.

이계수/ 오병두, 「친기업적 경찰국가와 민주법학: 비판과 대응」, 『민주법학』 제38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8.12, 11-38쪽.

이혜영, 『낮선 식민지, 한미 FTA』, 메이데이, 2006.

조국,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집회·시위 선진화방안”과 제18대 국회 집회·시위규제법안 비판」,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08년 한국과 표현의 자유> 학술대회』, 서울대 법대 백주년기념관, 2008.12.13, 65-83쪽.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엮음, 『한미FTA 국민보고서』, 그린비, 2006.

Weiner, Tim, 이경식 옮김, 『젯더미의 유산』, 랜덤하우스코리아(주), 2008.

[Abstract]